

제25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2021. 3. 4. ~ 2021. 3. 10.)

일 반 의 안

거 창 군

--- 목 차 ---

의안 번호	건명	페이지
2021 - 15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재무과)	1
2021 - 16	거창군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경제교통과)	14
2021 - 17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산림과)	24
2021 - 18	거창읍 김용마을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환경과)	32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의안
번호

2021 - 15

제출일자 : 2021. 2. .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1] 거창 거열산성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1. 제안이유

- 국가사적 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으로 역사문화교육 및 관광자원 활용

2. 주요내용

가. 취득 개요

- 기 간 : 2021. 2. ~ 12.
-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산45-1번지 일원
- 취득면적 : 60,614㎡(8필지)
- 소요예산 : 433백만원(국 303.1, 도 64.95 군64.95)
- 내 용 : 토지·지장물 매입, 사적종합정비계획수립용역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나. 취득(또는 처분)재산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분	재산 종별	재 산 소 재 지			기준가격	취득 시기	취득 사유	비고 (소유자)
		소재지	지목	면적				
계		사유지		60,614	28,815			
취득	토지	거창읍 상림리 산45-1	임	24,397	12,442	2021년	거열산성 토지 매입	신*철
		거창읍 가지리 산156-1	임	6,645	3,322			오*기
		거창읍 가지리 산157	임	1,785	910			신*수
		거창읍 가지리 산160-1	임	694	353			김*준
		거창읍 가지리 산160-2	임	15,967	7,983			김*자
		거창읍 가지리 산160-3	임	1,190	606			정*수
		거창읍 가지리 산164	임	614	300			양*언
		마리면 영승리 산87-3	임	9,322	2,899			김*우

※ 토지 기준가격 = 공시지가 × 면적

다. 추진경과

- 2020. 9. 24. : 거창 거열산성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지정
- 2020. 11. 12. : 2021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비 신청
- 2021. 1. 4. : 2021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 확정

라. 향후계획

- 2021. 2. : 공유재산 심의
- 2021. 3. :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 2021. 3. : 감정평가
- 2021. 3.~ 7. : 보상계획 공고,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 2021. 7.~12. :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마. 기대효과

- 사적의 안전한 보호 및 문화재 보존·관리의 효율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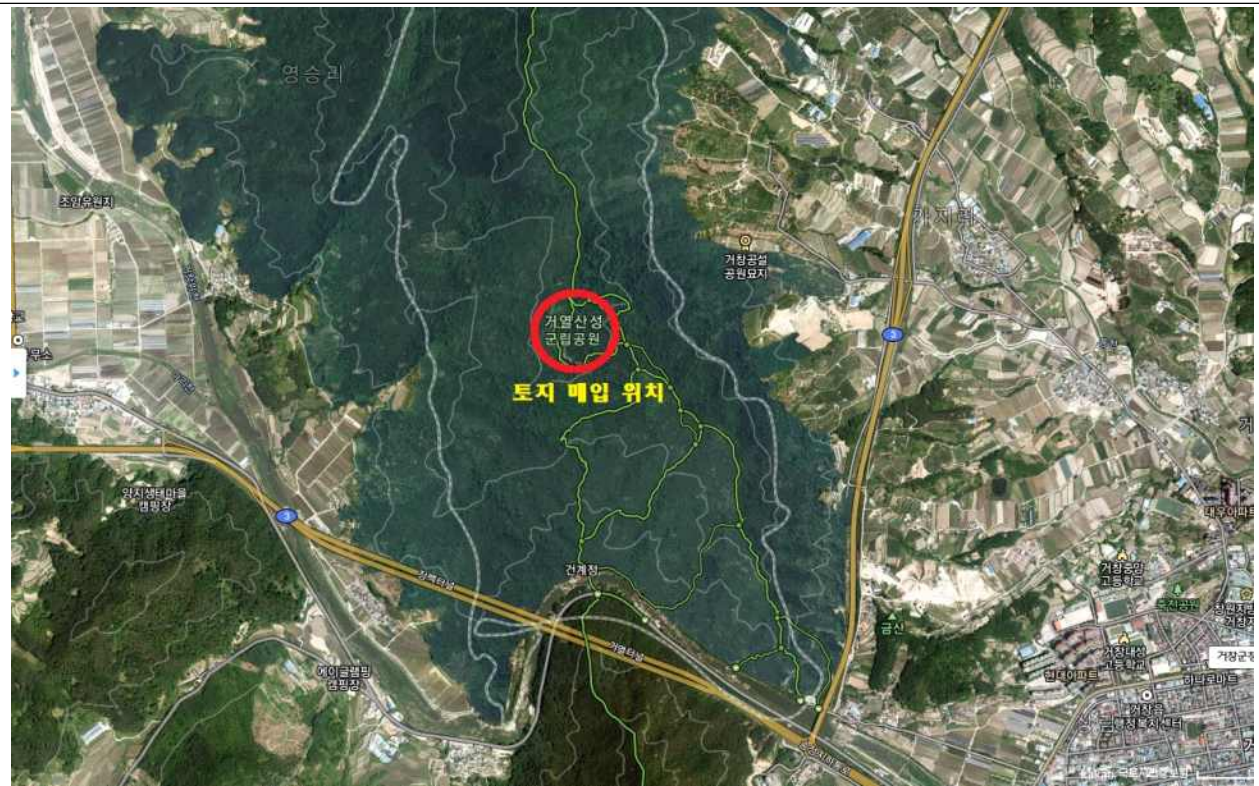
3.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제6조

4. 위치도 및 현황사진

- 불임참조

위치도 및 현황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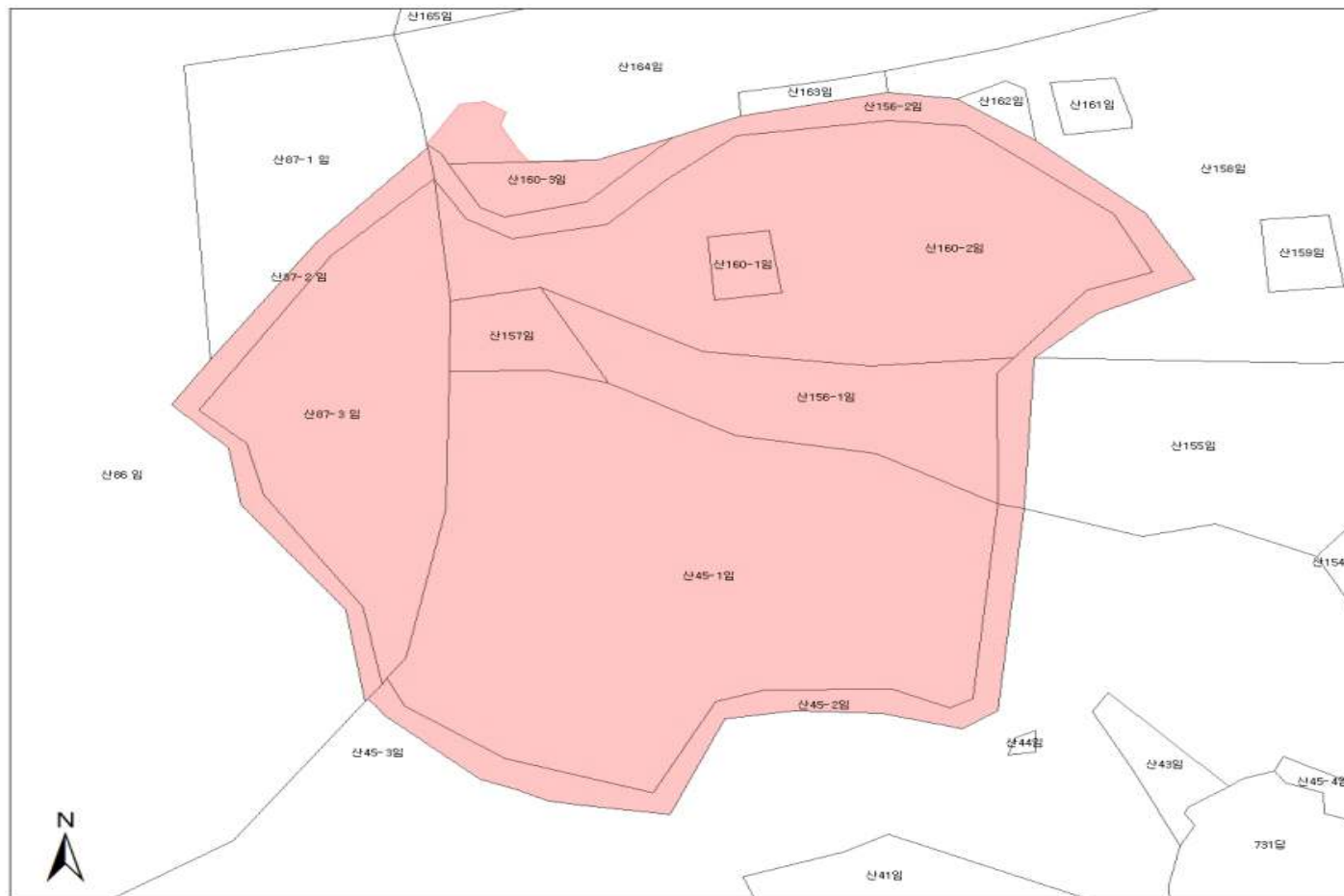
사진설명

위치도



사진설명

거열산성 전경



사적 제559호

거창 거열산성

居昌 居列山城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산45-2 외

범례

- 문화재
- 연속지적

축척

1:1,500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사진설명

지형도면

②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

1. 제안이유

-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소송 관련 거창군과 집행위 간 최종 합의에 따른 상표권 매입

2. 주요내용

가. 취득 개요

- 기 간 : 2021. 1. ~ 12.
- 양 도 인 : 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
- 양 수 인 : 거창군
- 취득내용 :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등 4종
- 소요예산 : 1,000백만원(군1,000)
- 내 용 : 거창국제연극제 등록 상표권 이전

나. 취득(또는 처분)재산 세부내역

구 분	등록번호	상표 이미지	상표내용
2018.12.24. 계약상표권	41-0199273	 거창국제연극제	KIFT 거창국제연극제
한글상표권	40-1527181	 거창국제연극제	거창국제연극제
영문상표권	40-1499911	Keochang International Festival of Theatre	Keochang International Festival of Theatre
거창국제 OFF 연극제	41-0336964	 거창국제OFF연극제	거창국제OFF연극제 OFF KEOCHANG INTERNATIONAL FESTIVAL OF THEATRE

다. 추진경과

- 2018. 12. 24. : 상표권 이전 계약 체결
- 2019. 05. 27. : 집행위, 약정금 청구 소송
- 2020. 11. 13. : 약정금 청구 소송 1심 판결(17.35억원 지급 등)
- 2020. 12. 04. : 상표권 매입 합의서 체결(합의금액 10억원), 소송취하
- 2021. 02. 02. : 상표권 이전 완료(집행위→거창군)

라. 향후계획

- 2021. 3. : 거창국제연극제 정상화 추진협의회 개최
- 2021. 3. ~ : 2021년 거창국제연극제 개최 준비
(문화재단 인력 확보, 행사 계획 수립 등)
- 2021. 4. : 연극제 개최 관련 추경 예산 확보(인건비, 행사비)
- 2021. 7. : 거창국제연극제 정상 개최

마. 기대효과

- 거창국제연극제의 정상 개최를 통한 제2의 도약
- 군민들의 문화욕구 충족 및 지역경제 활성화

3.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제6조

관 련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2.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 2.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 3.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 2.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 3.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④ 그 밖에 공유재산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 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 ⑥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隣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건물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제7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③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 1.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 2. 행정재산인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 3. 법 제43조의3에 따른 위탁재산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 정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2015.12.10.)

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군수가 자문하기 위하여 거창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 2. 법 제11조 및 영 제8조에 따른 행정재산·일반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행정재산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3.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4.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른 기부채납된 재산의 사용허가 기간 갱신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3. 기준가격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처분
 4. 행정재산으로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해당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기준가격 3천만원 이하의 재산에 대한 용도의 변경·폐지
 5. 법령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 및 무상대부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세운 후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거창군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콜택시)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의안
번호

2021 - 16

제출일자 : 2021. 2. .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1. 요구이유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운행 중인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콜택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명 : 거창군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콜택시) 운영

나. 사업량 : 교통약자콜택시 차량 5대

다. 위탁대상 사무

- 교통약자콜택시 위탁 운영(5대)
- 교통약자콜택시 유지관리 및 운송사업 전반

라. 기 운영현황

- 수탁기관 : (주)거창80번택시
- 위탁기간 : 3년(2019.1.1 ~ 2021.12.31.)
- 위탁차량

차 종	차 명	차량번호	연 식	비 고
중형승합	다뉴그랜드스타렉스 휠체어슬로프 왜건 모던	74라3712	2019	* 휠체어 슬로프 (경사판) 장착
중형승합	다뉴그랜드스타렉스 휠체어슬로프 왜건 모던	74라3713	2019	
중형승합	다뉴그랜드스타렉스 휠체어슬로프 왜건 모던	74라3763	2019	
중형승합	카니발 장애인차슬로프 (기본차량 디럭스급)	76어8649	2020	
중형승합	카니발 장애인차슬로프 (기본차량 디럭스급)	76어8651	2020	

○ 최근 3년간 차량 이용현황

- 2018년도 : 3,045명(1일 평균 운행횟수 9.6)
- 2019년도 : 2,809명(1일 평균 운행횟수 8.8)
- 2020년도 : 3,446명(1일 평균 운행횟수 9.4)

마. 운영계획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위탁업체 선정방법

-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 제반시설, 이동편의증진 기여도, 법령 또는 지시사항 준수여부 등 세부 선정기준을 별도 정하여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6조

○ 위탁기간 : 3년간

○ 운행시간

- 일, 월 : 7~22시,
- 화, 토 : 8시~23시
- 수, 목, 금 : 7시~23시

○ 운행구역 : 관내,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 장애인의 재활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에서 진료 및 치료를 목적으로 이동하고자 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구광역시 편도 운행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운영 장점

- 법인·단체에 위탁함으로써 교통약자에게 편리한 서비스 제공 및 신속한 대처 등 효율적인 운영 가능

나. 관계법령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다. 향후일정

- 위탁업체 모집 공고 : 2021. 10월중
- 특별교통수단 운영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 2021. 10월중
- 위탁업체 선정공고 및 이용요금 고시 : 2021. 11월중
- 위·수탁 계약 체결 : 2021. 11월중
- 위탁 운영 : 3년간(2022. 1. 1. ~ 2024. 12. 31.)

라. 소요예산

- 위탁운영비 : 연간 232,700천원(인건비, 차량 유지관리비 등 운영비 증가)
- ※ 예산사정에 따라 지원액 변경가능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콜택시) 민간위탁 운영 계획

거창군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운행 중인 교통약자콜택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 추진 계획임

□ 위탁운영 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
-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6항
(특별교통수단등의 도입·운영)

□ 위탁 개요

- 위탁업체 : 공개모집 / 위탁차량 : 5대
- 위탁기간 : 3년간(2022. 1. 1. ~ 2024. 12. 31.)
- 운행시간
 - 일, 월 : 7~22시,
 - 화, 토 : 8시~23시
 - 수, 목, 금 : 7시~23시
- ※ 추후 차량 추가 구입 및 수요 증가 등 필요에 따라 확대 운행 가능
- 운행구역 : 관내,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 ※ 장애인의 재활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에서 진료 및 치료를 목적으로 이동하고자 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경상남도를 벗어난 지역(대구)까지 운행

□ 그간의 운영 현황

- 수탁기관 : (주)거창80번택시
- 위탁기간 : 3년간(2019.1.1 ~ 2021.12.31.)

□ 운영방법

구분	방 법	세부내용	비 고
운영 방법	위탁운영	· 대상업체 : 공고일 현재 거창군에 사무실 및 주소를 두고 있으며, 비영리 법인, 단체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따른 운송사업자 · 위탁방법 : 공개모집	
운영 대수	5대	·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법 개정 및 지침에 따라 운영 대수는 변동될 수 있음	법정대수 9대
운영 시기	계약일로 부터 3년	· 2022. 1. 1 ~ 2024. 12. 31	
운행 시간	연중무휴	· 법정 공휴일 휴무 · 일, 월 : 07시~22시 · 화, 토 : 08시~23시 · 수, 목, 금 : 07시~23시 ※ 운영대수 또는 계획 변경에 따라 변동 가능	
운행 구역	경상남도내	· 장애인의 재활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에서 진료 및 치료를 목적으로 이동하고자 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경상남도를 벗어난 지역(대구)까지 운행(편도 운행)	
이용 대상	교통약자	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인 ② 65세 이상의 노약자 ③ 임산부 ④ 일시적으로 휠체어 이용자 ⑤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단, ①~④항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함	
이용 요금	위원회 심의결정	· 특별교통수단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 관내 : 2,000원(농어촌버스 기본요금의 2배) · 관외 : 시외버스 요금의 1.5배 적용 · 유료도로 통행료 : 지자체 지원	
이용 방법	즉시콜 사전예약 병행	· 회원신청 : 거창군청 3층 경제교통과 또는 각 읍·면에서 회원신청 가능 · 회원 신청 후 승인된 분들에 한하여 콜센터 연락하여 이용가능 · <u>이용예약 : 경남도 콜센터(1566-4488)</u> · 이용 시 지참서류 - 경상남도 관내 : 없음 - 대구 : '경상남도 내에서 치료가 어렵다'는 내용이 포함된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예약은 이용 전날 오후 9시 이후로, 이용하는 날 운행차량 20%까지만 예약이 가능함. ※ 2021. 1. 1.부터 회원제 시행, 승인기간 만료 전 미갱신시 이용불가 ※ <u>거창군 운영 차량 5대로 상시배차 불가 시</u> <u>타교통수단 이용 홍보</u>	

□ 위탁업체 지원 및 선정방법

○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콜택시) 차량 및 운영비

차 종	차 명	차량번호	연 식	비 고
중형승합	다뉴그랜드스타렉스 휠체어슬로프 왜건 모던	74라3712	2019	* 휠체어 슬로프 (경사판) 장착
중형승합	다뉴그랜드스타렉스 휠체어슬로프 왜건 모던	74라3713	2019	
중형승합	다뉴그랜드스타렉스 휠체어슬로프 왜건 모던	74라3763	2019	
중형승합	카니발 장애인차(슬로프) (기본차량 디럭스급)	76어8649	2020	
중형승합	카니발 장애인차(슬로프) (기본차량 디럭스급)	76어8651	2020	

- 운 영 비 : 232,700천원

▶ 차량 1대당 46,540천원(운전원 인건비, 보험료, 유류대 등)

※ 단, 예산사정에 따라 지원액 변경가능

○ 위탁업체 선정방법

- 공고일 현재 거창군에 사무실 및 주소를 두고 있으며, 비영리 법인, 단체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따른 운송사업자
-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 제반시설, 이동편의증진 기여도, 법령 또는 지시사항 준수여부 등 세부선정기준을 별도 정하여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향후계획

- 위탁업체 모집 공고 : 2021. 10월중
- 특별교통수단 운영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 2021. 10월중
- 위탁업체 선정공고 및 이용요금 고시 : 2021. 11월중
- 위·수탁 계약 체결 : 2021. 11월중
- 위탁 운영 : 3년간(2022. 1. 1. ~ 2024. 12. 31.)

□ 기대효과

- 법인·단체 등에 위탁함으로써 편리한 서비스 제공 및 신속한 대처 등 효율적인 운영 가능
- 이동에 어려움이 많은 교통약자의 필수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

관 계 법 령(요약)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행정과)

(제정) 1999.07.15 조례 제1515호
(일부개정) 2008.01.14 조례 제1878호
(일부개정) 2013.06.12 조례 제2138호
(일부개정) 2014.05.28 조례 제2192호

제 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정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약칭: 교통약자법)

[시행 2021. 1. 21] [법률 제17545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구역 내의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④ 특별교통수단(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이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인 자동차(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외에는 제9조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 28., 2020. 6. 9.>

⑤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까지로 할 수 있다.

⑥ 국가 또는 도(道)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의 구조·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4. 23.>

⑧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6. 1.]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경제교통과)

(제정) 2011.08.08 조례 제2049호
(일부개정) 2015.12.30 조례 제2306호
(일부개정) 2016.07.20 조례 제2328호 타조례개정(조례 제2328호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2016.7.20.)
(일부개정) 2018.10.31 조례 제2457호 타조례개정
(전부개정) 2019.07.01 조례 제2525호

제6조(특별교통수단등의 도입·운영)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상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상시 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법 제16조의2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④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경상남도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 ⑤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⑥ 특별교통수단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참고자료] 이용대상 관련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약칭: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시행 2020. 4. 24] [국토교통부령 제719호, 2020. 4. 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교통안전복지과) 044-201-3870

제5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를 말한다. <개정 2019. 7. 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특정 종류의 장애인에 대해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이라 한다) 외의 방법으로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 수를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 7. 5.>

[전문개정 2012. 11. 30.]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①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1. 30., 2019. 7. 5.>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②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1. 30.>

1.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까지의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③ 특별교통수단에는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 또는 휠체어 기증기 등의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2. 11. 30., 2019. 2. 8.>

④ 삭제 <2012. 11. 30.>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경제교통과)

(제정) 2011.08.08 조례 제2049호

(일부개정) 2015.12.30 조례 제2306호

(일부개정) 2016.07.20 조례 제2328호 타조례개정(조례 제2328호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2016.7.20.)

(일부개정) 2018.10.31 조례 제2457호 타조례개정

(전부개정) 2019.07.01 조례 제2525호

제7조(이용대상자)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21 - 17

제출일자 : 2021. 2. .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1. 제안이유

- 향노화힐링랜드를 찾는 국민들에게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산림복지전문가의 활용) 및 제21조(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등)의 규정에 의하여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운영을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민간 업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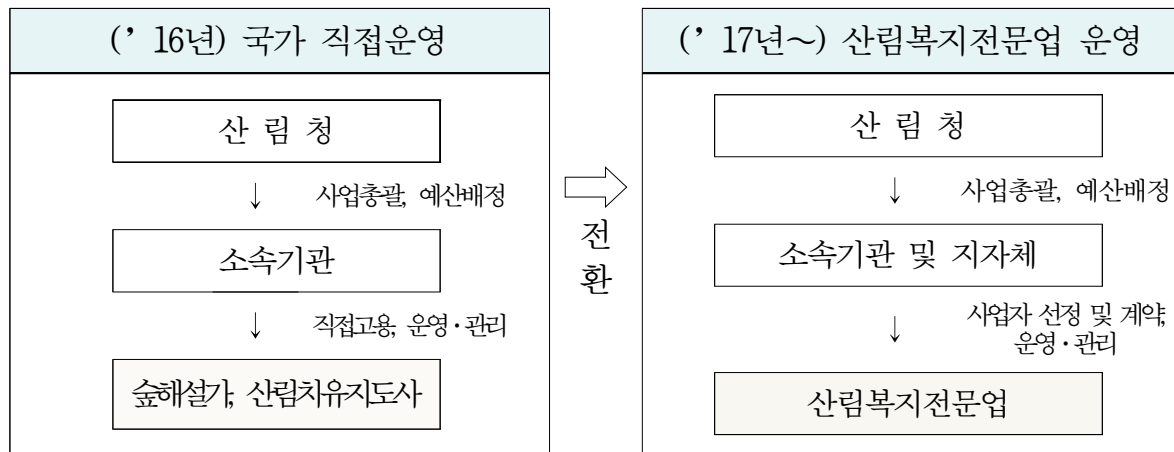
- 가. 사 업 명 :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위탁 운영
- 나. 위 치 : 거창군 가조면 의상봉길 830(향노화힐링랜드 일원)
- 다. 사 업 비 : 86,836천원(국 43,418, 도 13,025, 군 30,393)
- 라. 사 업 량 : 숲해설가 1명, 산림치유지도사 2명
- 마. 시설현황
 - 자연휴양림 : Y자형 출렁다리, 자생식물원, 견암폭포 등
 - 치유의 숲 : 무장애숲길, 산림치유센터, 숲체험장, 명상숲길 등
- 바. 위탁대상 사무 : 산림서비스(숲해설·산림치유) 기획·운영
 - 산림서비스(대면 및 비대면 병행) 신규개발 및 홍보물 제작
 - 전 연령층 맞춤형 산림프로그램 제공
 - 프로그램 운영, 설문조사(피드백) 및 결과를 통한 효과 분석
 - 코로나19상황에 따라 찾아가는 숲 교육 등 대체프로그램 운영
- 사. 위탁기간 : 2021. 4. ~ (1년 이내) ※ 국·도비 예산확보 신규사업
- 아. 향후계획
 - 사업계획 수립(사업규모 및 과업목표 설정)
 - 사업자 선정(사업공고 접수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선정)
 - 협약체결, 사업수행 및 평가환류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장점

-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운영을 산림복지전문업을 통해 위탁(운영)함으로써 양질의 산림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민간분야 활성화

<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으로 전환 >



나. 관계법규

-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산림복지전문가의 활용) 및 제21조(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등)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산림교육전문가) 및 제20조(지원)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 등)
-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산림청훈령)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7조

관 계 법 령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산림복지전문가의 활용)

- ① 산림복지시설을 조성·운영하여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복지전문가를 배치하여야 한다.
-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가의 활용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등)

- ① 산림복지전문업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②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는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산림복지전문업의 업무범위, 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산림교육전문가)

- ①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 2.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 3.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명의 사용 및 자격증 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
- ③ 산림교육전문가는 다른 사람이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누구든지 산림교육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 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으려는 사람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 또는 이와 관련된 시설에서 산림교육을 실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를 배치하여야 한다.
- ⑦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지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림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 2. 제8조제3항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은 자
- 3.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하는 자
- 4. 제12조제2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한 자
- 5.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아 운영하는 자
- 6. 제16조에 따른 한국숲사랑청소년단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 등)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이 치유의 숲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산림치유지도사를 활용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치유지도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운영계획 수립)

운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연도의 운영계획을 매년 12월 말까지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치유의 숲의 일반현황
- 2. 치유의 숲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3.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계획
- 4. 산림치유지도사 배치계획

제9조(프로그램 운영)

- ① 운영·관리자는 국민들이 치유의 숲시설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산림치유지도사를 활용하여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기준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에 따른다.
- ③ 운영·관리자는 치유의 숲의 산림치유 환경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산림치유지도사의 업무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계획하는 교육훈련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
-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 위임 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

-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제6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 ① 군수는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 수탁기관 선정,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시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3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군 소속 공무원

2. 대학교수, 변호사 등 민간위탁 대상사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격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구성하고, 수탁기관 선정 및 평가 등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민간위탁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회동의)

- ①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하는 경우 위탁하려는 사무의 처리 소관부서(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포함한다. 이하 “소관부서”라 한다)가 수탁기관 모집을 위한 공고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전의 예에 따른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 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① 군수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 제2항·제3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

하고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이용료와 관리비용을 다시 대여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 ④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⑤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의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군이 직접 시행한다.

거창읍 김용마을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안 번호	2021 - 18
----------	-----------

제출일자 : 2021. 2. .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1. 제안이유

- 2021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중 ‘주민수익형 태양광 발전소 설치사업’으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정책에 부응하고
-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로 마을소득 증대 및 공동기금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추진개요

- 사 업 명 : 주민수익형 태양광 발전소 설치사업
- 사 업 자 : 김용마을회 대표 김 성 대
- 사업기간 : 2021년 5월 ~ 11월(7개월간)
- 발전용량 : 19.9kw
- 사 업 비 : 45,000천원(군 40,500 자부담 4,500)
- 연간수익 : 5,000천원/정도

※ 수익금 사용 : 김용마을 번영을 위한 제반사업 및 주민복지증진과 화합도모 등
목적의식이 뚜렷한 사업에 사용(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

나. 추진사항

- 2020. 10. : 국비 공모사업 선정

다. 재산의 표시

위 치	면 적	태 양 광 설치면적	용 량	사용허가신청자
거창읍 양평리 338-5(주차장)	812m ²	100m ²	19.9kw	김용마을회 대표 김 성 대

라. 향후 추진계획

- 2021. 5 :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및 원상복구 계획 접수(환경과)
 -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후 사용료 부과 및 원상복구비 예치
- 2021. 11. : 공사 완료 후 보조사업 정산(경제교통과)

3.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2항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촉진법」 제26조
- 「거창군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조례」 제12조 제4항

4. 위치도 및 현장사진



주소 :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338-5(지목 : 주차장)



<설치사례>

관 련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② 법제13조 단서 및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그 영구시설물의 축조 또는 원상회복 등에 관한 계획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7. 7.>

[전문개정 2009. 4. 24.]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거창군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조례

제12조(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④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거창군의 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동의 절차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다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7조(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소관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은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